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- 호

『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4년 10월 28일

인천광역시의회 의장

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공간조명, 광고조명, 장식조명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조명기구의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부터 안 제9조)
-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. 11. 10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5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가. 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간조명”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2. “광고조명”이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3. “장식조명”이란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시설물,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.

제3조(조명기구의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
 - 가.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공간
 - 나. 옥외 체육 공간
 - 다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(단지 내 영향은 제외한다)

2.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

3.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식조명

제4조(시장의 책무 등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(이하 “빛공해”라 한다) 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민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 시책에 협력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)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·변경에 관한 사항
3.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4.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
5.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

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, 환경정책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빗공해 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.

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빗공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

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)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군수·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명칭·위치 및 면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1. 철새 도래지

2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

3. 그 밖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해당 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(지도 및 권고) 시장은 옥외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.

제13조(지원) 시장은 빗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·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포상) 시장은 빗공해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련법령	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○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○ 제7조(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) 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○ 제2조(조명기구의 범위) 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○ 제3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) ○ 제6조(빛방사허용기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조례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역 주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)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·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조명환경관리구역) ① 시·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2.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·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3.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
4.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: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,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

제2조(조명기구의 범위)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1.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
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

나.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

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

라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

2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의료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)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

발광기구 및 부속장치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, 시설물,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

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4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

다. 교량

라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

□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

제3조(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) 법 제9조제2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
2. 「자연환경 보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
3.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
4.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·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
5. 그 밖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제6조(빛방사허용기준) ① 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시·도지사는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 조례로 제1항의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

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제정안 제5조의 인천광역시 빗공해방지지역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 (2,000천 원/년)이 수반될 수 있음.
- 한시적 경비로 빗공해 측정장비 구입비 120,000천 원/년 소요
- 제도시행 초기 환경부 시범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100,000천원/년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, 임의적 한시적 제도 홍보사업비 임
-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본 조례의 적용은“조명 환경관리구역”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 기준 5년이 경과되어야 적용됨에 따라 노후시설 교체 일정에 따라 빗방사기준 준수하므로 별도 비용산정 불요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-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시·도 빗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‘인천광역시 빗공해방지 지역위원회’는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들로 구성됨으로써 수당적 성격의 비용으로 관리·운영될 것이므로 연평균 2,000천원 수준의 비용이 예상됨

4. 작성자

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정재덕